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급 수 기준 교직원 정원 산정 근거 마련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2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학급 수 기준 교직원 정원 산정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1.
3. 회부연월일: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학급 수 기준 교직원 정원 산정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학교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②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③ (생략)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 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 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 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u><신설></u>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 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 려하여 정한다.</u> <u>⑤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u>

<신 설>	<u>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⑥ 그 밖에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u>
--------------------	---

①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 교직원 정원 산정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¹⁾이 정하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과 교직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표 1] 교직원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구분	교원	직원
국립 학교	• <u>정원 총수 규정</u>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공무원의 정원) 별표1) • <u>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 수를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해당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u>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 별표3)) * 학교별 기능 및 업무량 변경 등 추가 소요 정원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 * 학교별 교장, 교감, 학급담당교원, 비교과교사,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규정한 관련 법령 고려	
공립 학교	• <u>정원 총수 규정</u>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별표2) • <u>시·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 직별 정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배정</u>(같은 규정 제3조(정원의 배정)) * 교육부장관이 시·도별 정원을 배정할 때, 총 정원의 범위에서 시·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함 • <u>시·도 정원 배정기준 규정</u>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별표 1~5) *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원 총수의 99%는 <u>학생 수 구간</u>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 <u>정원 총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규정</u>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 (같은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공립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음 (같은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사립 학교	— • <u>교육부장관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가능</u>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등)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족액 지원 (인건비는 정원 기준 범위 내 지원)	• <u>정원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u>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자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해당 조항 정리

먼저, 교직원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과 관련하여, **국립학교**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과 직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 수를 규정하면서 직급별 정원은 해당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공립학교는 교원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원 총수를 규정하면서, 시·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하부조직별 정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배정하도록 하고, 시·도 정원 배정기준은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사는 정원 총수의 99%를 학생 수 구간 구분²⁾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으로 배정함. 직원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원 총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서 교원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직원의 정원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를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

2) '학생 수 구간'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으로, 학교 규모 증가에 따라 교사 규모가 증가하도록 전체 학교 중 소규모(30%) 10명 단위, 중규모(40%) 50명 단위, 대규모(30%) 100명 단위로 산정(2025년 기준)

원이 관리되고 있음.³⁾

이와 같이 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대통령령 등에 인원 수 또는 기준이 규정되거나 이를 각 시·도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사의 정원 기준에서 학생 수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한편, 2024년 기준으로 교직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과교사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학급당 1명(교과전담교사는 4학급당 1명) 수준으로 배치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으며,⁵⁾ 직원의 경우에도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음.⁶⁾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각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증감함.

개정안 제19조제4항은 학교 교직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교육

3) [재정결합보조금 지원기준]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재정결합보조금 (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기간제교원 퇴직금 등	법인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기준 초과금액, 감사결과에 따른 반납 금액, 인건비 초과 신청액 등	연초에 총액 규모를 산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월 교부 ※ 예산사정 또는 교육청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주: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재정자립교 포함)는 지원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계획, 2025.3. 참고

[교원 인건비 중 학급당 교과교사 정원기준]

(단위: 명)

급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공업계고	상업계고	산업수요맞춤형고
급당정원	1.645	1.931	2.351	1.998	2.747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계획, 2025.3. 참고

4) 【참고자료1】 교직원 정원 배치 관련 법령 참조

5) 【참고자료2】 시·도교육청별 교사 배치 기준(2024학년도 기준) 참조

6) 【참고자료3】 시·도교육청별 직원 배치 기준(2024학년도 기준, 중학교 사례) 참조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직원 정원을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직원 정원도 감축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산정하는 것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임.

개정안과 같이 학교 교직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경우, 법률에 규정된 교직원 정원 기준을 따르게 되어 정원 산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이 확보되고, 교직원의 정원 산정 기준과 배치 기준의 불일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직원 수 감소로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정원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학급 수’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⁷⁾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급 수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 학급 수와 이에 필요한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⁸⁾

다음으로, 현행법령은 교과교사와 직원 외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하고, 비교과교사 중 사서교사, 진로전담교사 등은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이는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 수 또는 학교를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정원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

7) 참고로, 현행법령에서도 교육감이 학급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급별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학급 수를 편성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참고자료4】 시·도교육청별 학급편성기준

8) 적정 학급 수와 이에 필요한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참고자료1】 교직원 정원 배치 관련 법령 참조

지 않을 우려가 있음.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⁰⁾

교육감 소속 직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12년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¹¹⁾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정원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서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45호, 2012.2.29. 전부개정, 2013.1.1. 시행) * 현행 규정 내용도 동일함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같은 규정 제2조제1호)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 전 조항

제14조의2(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부장관의 적정 수 교직원 확보 시책 수립·실시 및 국회 보고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9조제5항은 교육부장관이 적정 수의 교직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에는 교육부장관이 보고해야 할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매년 개정·공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4년까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에 보고(2025.2.25.)된 바 있음.¹³⁾

개정안은 제19조제5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구체화 된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의 교직원 정원 관련 시책 수립·실시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함.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13)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 정원에 관한 국회 보고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김영호위원장,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2024.10.22.)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보고(교육부 교원정책과-1383, 2025.2.25.)

개정안에 따라 적정 수의 교직원 확보를 위한 내용이 규정될 경우,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된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행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다만,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직원의 경우, 정원에 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인건비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임.¹⁵⁾

또한 지방공무원인 직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서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이 교직원 확보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14)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자율성 보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안 제19조제4항)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 교직원 정원 산정
○ 교육부: 신중검토 - 공무원의 정원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력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조직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해당 법령 취지에 반할 우려 - 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배정할 경우 지역 간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있음에도 교원이 동일하게 배정되어 시·도간 교육환경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학급 쪼개기 등으로 과도한 교사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수·비교과 교원은 학급을 기준으로 산정 및 배치하는 것이 아닌 학생·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각급 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재정여건, 기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자치에 부합함.
○ 대구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신중검토 - '학급 수'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학교가 많은 신도시 및 학생 과밀지역은 교육환경 개선 및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도별 유불리 및 지역 간 불평등 발생이 우려됨.
○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정부조직법」 제8조는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자치법」 제33조는 교육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교육자치법」 취지에 반하여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19조제4항의 삭제가 필요함.
(안 제19조제5항) 교육부장관의 적정 수 교직원 확보 시책 수립·실시 및 국회 보고
○ 교육부: 신중검토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의 교원 정원 확보를 위

한 계획 수립은 실효성이 낮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의 기능과 업무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한하여 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단위기관별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1. 교직원 정원 배치 관련 법령

1) 교장, 교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2) 특수학교 교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u>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4) 영양교사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u>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u>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6)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법률 제20862호, 2025.4.1. 개정, 2025.10.2. 시행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7)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2. 시·도교육청별 교사 배치 기준(2024학년도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1학급마다 0.25명	• 별도 계획	• 별도 계획
부산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학급 수에 비례하여 산정	• 학급 수 $\times 1.5 + 2$	• 학급 수 $\times 2 - 1$
대구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내외	• 학급당 1명(필요시 1명 추가)	• 학급당 1명(필요시 1명 추가)
인천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 지역별·학교별 학급당 1.53 ~ 3명 배치	• 학급당 1.82명
광주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4학급마다 1명	• 학급 수(1~36)별 배치(3~56명)	• 학급 수(1~36)별 배치(3~66명)
대전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 • 3학급초과: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증원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 • 3학급초과: 1학급 증가할 때마다 2명 이상의 비율로 증원
울산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학급당 0.75명	• 학급당 1.69명	• 학급당 1.92명
세종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 학급 수별 배치 - 3~9학급: 8~15명 - 10학급 이상: 학급 수 $\times 1.55$명	• 학급 수별 배치 - 3~9학급: 9~18명 - 10학급 이상: 학급 수 $\times 1.8$명
경기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 35학급 미만교: 1~6 학년 학급 수별(3~34학급) 배치(1~6명) - 35학급 이상교: 3학년 이상 학급 수별(3~59학급) 배치(1~14명)	• 학급 수별 배치 - 3~10학급: 10~19명 - 11학급 이상: 학급 수 $\times 1.75$명	• 학급 수별 배치 - 3~8학급: 10~16명 - 9학급 이상: 학급 수 $\times 1.95$명
강원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1~6학년 4학급 이상 1명 이상	• 학급 수의 73% - 3학급 미만: 5명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 - 3학급초과: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8명 추가	• 학급 수의 76%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 - 3학급초과: 1학급 증가할 때마다 2명 추가
충북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부터, 교육부 정원 배치, 학생 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별도기준에 따라 배치	• 교사 1명당 평균 수업시수 기준으로 학급 수(1~42학급) 별 배치(5~68명)	• 교사 1명당 평균 수업시수 기준으로 학급수(1~42학급) 별 정원 배치(5~74명)
충남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 학급 수(3~46학급)별 배치(7~66명)	• 학급 수(3~46학급)별 배치(9~81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북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학급 수를 고려하여 배치	• 학급 수별 배치 - 3~8학급: 7~13명 - 9학급 이상: 별도규정	• 학급 수별 배치 - 3~8학급: 7~15명 - 9학급 이상: 별도규정
전남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 학급마다 0.75명	• 학급 수(1~38)별 배치(3~60명)	• 학급 수(1~38)별 배치(3~71명)
경북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 학급마다 0.8명	• 학급 수(1~41)별 배치(3~66명)	• 학급 수(1~41)별 배치(3~77명)
경남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 학급마다 0.75명 이상	•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
제주	• 학급당 1명 • 교과전담교사: 4학급 이상 부터 학급수를 고려하여 배치 (1~9명)	• 교육부 배치 정원을 기준으로 주당 18시간(교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배치	• 교육부 배정 정원을 기준으로 주당 16시간(교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배치

주: 1. 일반학교, 일반학급, 인문계(고등학교)의 교과교사 배치 기준임

2. 시·도교육청별로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증감함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시·도교육청별 직원 배치 기준(2024학년도 기준, 중학교 사례)

(단위: 명)

구분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서울	학급 수	16이하		17~42		43이상			16이상			17이하															
	정원	5		6		7			5			6															
부산	학급 수	9이하		10~27		28이상			14이하		15~28		29이상														
	정원	3		4		5			3		4		5														
대구	학급 수	3이하		4~13		14~23		24이상		15이하		16~23		24이상													
	정원	1		3		4		4		3		4		4													
인천	학급 수	분교장	6이하		7~15		16~39		40이상		6이하		7~15		16~35		36이상										
	정원	1	2		3		4		4		2		3		4		5										
광주	학급 수	10이하			11~31			32이상				9이하			10이상												
	정원	3			4			5				3			4												
대전	학급 수	12이하		13~27		28~42		43이상			12이하			13이상													
	정원	3		4		4		5			3			4													
울산	학급 수	8이하		9~18		19~30		31이상			18이하			19이상													
	정원	3		4		5		5			3			4													
세종	학급 수	6이하			7~27			28이상				-			-												
	정원	2			3			4				-			-												
경기	학급 수	15이하		16~19		20~26		27~35		36이상			14이하		15~23		24~41		42이상								
	정원	2		2		3		4		5			3		4		5		6								
강원	학급 수	* 학급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결산 등으로								4이하		5~9		10~17		18이상											
	정원	배치기준값을 산출하여 2~6명 배치								2		3		4		5											
충북	학급 수	3이하		4~13		14~34		36이상		기숙형		3이하		4~6		7~13		14~30		31이상							
	정원	2		2~3		4		5		3		2		2		3		4		5							
충남	학급 수	분교장	4이하		5~9		10~20		21~37		38이상		4이하		5~9			10이상									
	정원	2	2		3		4		4		5		2~3		3			4									
전북	학급 수	3이하		4~9		10~18		19~25		26~34		35이상		3이하		4~5		6		7~9		10~12		13~24		25이상	
	정원	3		3		4		5		6		7		2		3		3		3		4		5		6	
전남	학급 수	분교장		7이하		8~15		16이상			7이하			8~15			16이상										
	정원	2		3		3~4		3~4			3			3~4			3~4										
경북	학급 수	3이하	3~13		14~22		23~29		29~34		35이상		기타		3이하		4~12		13~29		30~54		55이상				
	정원	1	3		4		5		5		6		3~4		2		3		4		5		6				
경남	학급 수	6이하		7~13		14~22		23이상			7이하		8~15		16~20		21~30		31이상								
	정원	3		3		3		4			3		3		3		4		5								
제주	학급 수	9이하		10~24		25~35		36이상			10~24			25이상													
	정원	3		4		5		6			4			5													

주: 1. 직원은 교육행정직렬, 시설관리직렬, 사무운영직렬, 교육공무직, 사무행정실무원 등이 해당됨
 2. 시·도교육청별로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증감함
 3. 학급 수 구분 구간이 다름에도 인원이 동일한 것은, 인력 구분 또는 직급 등이 다른 경우임.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4. 시·도교육청별 학급편성기준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최저~최고)	2024년 (최저~최고)	학급당 학생수	2023년 (최저~최고)	2024년 (최저~최고)	학급당 학생수	2023년 (최저~최고)	2024년 (최저~최고)	학급당 학생수
서울	25	25	22.1	26	26	24.9	26	26	24.5
부산	28	28	22.1	28	28	25.6	28	28	21.7
대구	27	27	22.9	26	27	25.8	(일반) 26 (특성화) 23	(일반) 25.2 (특성화) 22	23.4
인천	27	27	22.7	28	28	27.6	28	28	24.3
광주	20.4~24.7	20.4~24.7	20.8	23~28	23~27	24.7	(일반) 26~27.5 (특성화) 18~22	(일반) 24~28 (특성화) 18~21	24.7
대전	23	23	20.6	25	25	25.1	(일반) 25.5 (특목고) 15~32 (특성화) 18 (자율고) 26~35	(일반) 23 (특목고) 15~32 (특성화) 18 (자율고) 26~35	22
울산	27 (1학년 20)	27 (1학년 20)	22.2	27	27	26.3	(일반) 24~27 (예술고) 21 (특성화) 20~22 (특목고) 18~30 (자율고) 30	(일반) 24~27 (예술고) 21 (특성화) 20~22 (특목고) 18~30 (자율고) 30	24.7
세종	20~25	20~26	19.85	25~27	25~27	23.93	25~27	25~27	23.03
경기	28~32	26~30	23.2	28~36	27~36	28.6	(일반) 26~35 (특성화) 22~28 (특목고) 15~40	(일반) 25~35 (특성화) 22~28 (특목고) 15~40	26.4
강원	23~25	23~24	16.38	28	28	22.73	(일반) 22~32 (특성화) 16~26	(일반) 22~28 (특성화) 16~24	22.2
충북	25~27	25~26	19.9	25~28	25~28	24.8	(일반) 22~30 (특성화) 18~24	(일반) 20~29 (특성화) 16~20	23.9
충남	26~28 (신입생 23)	26~28 (신입생 22)	19.3	30	28 (지역별 실정에 따라 28~30 탄력적운용)	26.1	(일반) 20~34 (특성화) 16~28	(일반) 20~34 (특성화) 16~28	25.3
전북	23~28 (1학년20)	23~28 (1~2학년20)	17.2	23~30	23~29	23.4	(일반) 20~28 (특성화) 15~20 (특목고) 18~30 (자율고) 28	(일반) 20~27 (특성화) 15~20 (특목고) 18~25 (자율고) 28	22.3
전남	20~28	20~28	16.9	28~29	28~29	23.3	(일반) 22~30 (특성화) 20~23	(일반) 20~28 (특성화) 18~22	20.6
경북	(시) 28 (1학년 27) (읍·면) 26 (1학년 24)	(시) 28 (1학년 27) (읍·면) 24	19.7	(시) 26 (읍·면) 24	(시) 26 (읍·면) 24	22.3	(일반) 21~26 (특성화) 21~25	(일반) 21~25 (특성화) 21~25	21.4
경남	26 (1학년 23)	26 (1학년 23)	14.3	25~28	25~28	25.6	(일반) 22~33 (특성화) 15~20	(일반) 22~31 (특성화) 15~20	23.6
제주	25~28	25~27	21.6	25~29	25~30	26.5	(일반) 25~29 (특성화) 23~26	(일반) 25~30 (특성화) 23~25	26.6

자료: 교육부

5. 통계자료

1) 최근 10년간 공립 초등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정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교	6,120	6,128	6,152	6,163	6,176	6,201	6,221	6,222	6,219	6,212
증감	-	8	24	11	13	25	20	1	△3	△7
증감률	-	0.1	0.4	0.2	0.2	0.4	0.3	0.0	△0.0	△0.1
학급¹⁾	113,266	112,650	113,146	114,573	116,222	115,643	115,975	118,034	116,995	115,679
증감	-	△616	496	1,427	1,649	△579	332	2,059	△1,039	△1,316
증감률	-	△0.5	0.4	1.3	1.4	△0.5	0.3	1.8	△0.9	△1.1
학생²⁾	2,665,762	2,624,452	2,626,405	2,664,402	2,700,467	2,647,300	2,625,459	2,616,671	2,556,520	2,447,831
증감	-	△41,310	1,953	37,997	36,065	△53,167	△21,841	△8,788	△60,151	△108,689
증감률	-	△1.5	0.1	1.4	1.4	△2.0	△0.8	△0.3	△2.3	△4.3
학급당 학생수	23.5	23.3	23.2	23.3	23.2	22.9	22.6	22.2	21.9	21.2
증감	-	△0.2	△0.1	0.0	△0.0	△0.3	△0.3	△0.5	△0.3	△0.7
교원³⁾	149,095	148,445	148,245	148,245	148,827	149,576	150,035	149,819	148,683	147,683
증감	-	△650	△200	0	582	749	459	△216	△1,136	△1,000
증감률	-	△0.4	△0.1	0.0	0.4	0.5	0.3	△0.1	△0.8	△0.7

주: 1) 학급: 일반학급 기준

2) 학생: 전체학생 기준(일반+특수)

3) 교원: 특수, 비교과 교원을 제외한 정원(교장, 교감 포함)

자료: 교육부(학교, 학급, 학생: 각 연도 4월 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교원: 공립 교원 정원령)

2) 최근 10년간 공립 중등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정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교	3,960	3,974	3,987	3,980	3,978	3,998	4,028	4,040	4,052	4,056
증감	-	14	13	△7	△2	20	30	12	12	4
증감률	-	0.4	0.3	△0.2	△0.1	0.5	0.8	0.3	0.3	0.1
학급¹⁾	75,448	74,225	73,397	72,790	72,119	72,492	72,796	73,436	73,470	73,823
증감	-	△1,223	△828	△607	△671	373	304	640	34	353
증감률	-	△1.6	△1.1	△0.8	△0.9	0.5	0.4	0.9	0.0	0.5
학생²⁾	2,308,047	2,187,439	2,085,347	1,978,793	1,878,153	1,859,945	1,874,918	1,859,107	1,859,749	1,886,733
증감	-	△120,608	△102,092	△106,554	△100,640	△18,208	14,973	△15,811	642	26,984
증감률	-	△5.2	△4.7	△5.1	△5.1	△1.0	0.8	△0.8	0.0	1.5
학급당 학생수	30.6	29.5	28.4	27.2	26.0	25.7	25.8	25.3	25.3	25.6
증감	-	△1.1	△1.1	△1.2	△1.1	△0.4	0.1	△0.4	△0.0	0.2
교원³⁾	143,970	143,970	143,570	145,012	145,012	144,774	144,086	143,204	140,939	139,439
증감	-	0	△400	1,442	0	△238	△688	△882	△2,265	△1,500
증감률	-	0.0	△0.3	1.0	0.0	△0.2	△0.5	△0.6	△1.6	△1.1

주: 1) 학급: 일반학급 기준

2) 학생: 전체학생 기준(일반+특수)

3) 교원: 특수, 비교과 교원을 제외한 정원(교장, 교감 포함)

자료: 교육부(학교, 학급, 학생: 각 연도 4월 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교원: 공립 교원 정원령)

3) 최근 10년간 특수·비교과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¹⁾	11,323	11,929	12,436	13,609	14,645	16,043	17,257	18,364	18,454	18,877
증감	-	606	507	1,173	1,036	1,398	1,214	1,107	90	423
증감률	-	5.4	4.3	9.4	7.6	9.5	7.6	6.4	0.5	2.3
비교과²⁾	13,249	13,485	13,709	15,577	16,689	17,950	19,713	21,690	22,019	22,436
증감	-	236	224	1,868	1,112	1,261	1,763	1,977	329	417
증감률	-	1.8	1.7	13.6	7.1	7.6	9.8	10.0	1.5	1.9

주: 1) 특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순회교사

2) 비교과: 학교급 및 교사 구분 없이 전체 인원

자료: 교육부(공립 교원 정원명)

4) 최근 10년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의회사무처	81	78	84	112	112	119	125	131	134	135
증감	-	-	6	28	0	7	6	6	3	1
증감률	-	-	7.69	33.33	0	6.25	5.04	4.80	2.29	0.75
본청	6,707	6,752	6,956	7,532	7,663	7,997	8,204	8,661	8,813	9,188
증감	-	-	204	576	131	334	207	457	152	375
증감률	-	-	3.02	8.28	1.74	4.36	2.59	5.57	1.75	4.26
직속기관	6,212	6,231	6,188	6,339	6,562	6,645	6,720	6,912	7,129	7,106
증감	-	-	△43	151	223	83	75	192	217	△23
증감률	-	-	△0.69	2.44	3.52	1.26	1.13	2.86	3.14	△0.32
교육지원청	10,331	10,767	10,986	11,530	12,750	13,488	14,337	14,710	15,217	16,068
증감	-	-	219	544	1,220	738	849	373	507	851
증감률	-	-	2.03	4.95	10.58	5.79	6.29	2.60	3.45	5.59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812	671	658	649	675	714	718	731	699	753
증감	-	-	△13	△9	26	39	4	13	△32	54
증감률	-	-	△1.94	△1.37	4.01	5.78	0.56	1.81	△4.38	7.73
각급학교	43,933	42,970	42,494	42,785	42,473	42,424	42,340	42,737	42,823	42,501
증감	-	-	△476	291	△312	△49	△84	397	86	△322
증감률	-	-	△1.11	0.68	△0.73	△0.12	△0.20	0.94	0.20	△0.75
합계	68,076	67,469	67,366	68,947	70,235	71,387	72,444	73,882	74,815	75,751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교육부